

사랑가득한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계약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32명

2. 이용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 받은 자 또는 주야간보호급여로 판정 받은 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이용 정원내에서 이용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이용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 승인절차를 통해 시설과 이용인 및 보호자의 계약에 의해 이용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5 등급, 인지지원등급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별표1] 자료 참조 바람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이용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이용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④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 ⑧ 본 이용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⑤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④ 이용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지장을 줄 때
-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이용자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는 생활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단,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이용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

2.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협약병원 의사가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협약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따른 차량이용

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이용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든지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용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이용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 이용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
 - ②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및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 ③ 이용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4. 이용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5. 이용인은 그 거실을 주거로서만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용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6. 이용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될 때 시설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갖는다.
 -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 포함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2. 면책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시설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및 이용계약서에 의한다